

졌습니다.

이것은 대티고개 올라가면 저번에 저희들 區廳에서 道路擴張 工事を 했습니다.

道路擴張 工事を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도로부지 일부가 폐도가 되면서 그게 개인집 담장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個人이 사고자 해서 賣却코자 하는 事項이 되겠습니다.

그 位置는 첨부되어 있는 위치현황도를 한번 參考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편에 보면 있습니다.

다음 9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來年度에 알고 있는 財産의 변동에 대해서 議會의 同意를 얻고자 하는데 우선 변경되는 사항은 建物新築 세棟과 그 다음 유상으로 빌려주는 것 한棟 그 다음 무상사용한棟 이렇게 해서 建物에 대한 임대료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取得하고자 하는 財産은 保健所 新築에 따라가지고 2,106㎡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多大2洞舍가 完工되면 1,026㎡가 取得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舊平洞舍가 完工되면 835㎡가 取得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件의 取得과 임대는 저희는 區廳에 있는 식당을 職員들 厚生福祉를 위해 빌려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甘川洞에 가면 社會福祉館이 있습니다.

우리 區 社會福祉館管理條例에 의해서 法人에게 무상으로 임대코자 하는 事項이 되겠습니다.

說明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參 照)

釜山直轄市沙下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99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

199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이상 3件 끝에 실음)

○委員長 白盛守 朱剛右 財務課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沈玩澤 釜山直轄市沙下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1. 제안이유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5항에 산림법 시행령상의 일부에 대해서만 대부(사용)료율을 규정하고 있어 공유임야의 대부 및 사용허가는 동조례 제61조에 의거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림법령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임.

2. 주요골자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1항을 준용

현행	개정안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④ (생략) ⑤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④ (현행과 같음) ⑤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한다.

3. 검토의견

국·공유림의 보존, 확대 등 관련업무의 효율적,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해 조례 체제상 혼란이 없도록 하여 원칙적으로 산림법상의 국유임야와 동일하게 하며 자치단체의 요율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專門委員 沈玩澤 다음은 9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에 대하여 檢討報告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參 照)

1. 제안이유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공유재산 취득: 1건 660㎡
- 공유재산 매각: 1건 1㎡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공시지가
취득	구평동 159번지 일원	임야	660㎡	145,680천원
매각	괴정동 102-8	대	1㎡	973천원

3. 검토의견

- 구평동 159번지 일원의 660㎡는 구에서 매입하여 구평동사의 신축부지로 사용하고
- 괴정동 102-8번지 1㎡는 정영식 소유의 건물이 '81. 4. 30 이전부터 점유되어 있으며 재산의 규모나 형상 등이 보존가치가 없어 매각코자 하므로 동의함이 가하다고 사료됨.